

의안번호	제 60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0년 12월 7일

충청북도의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603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7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의회 원격출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원격 출석 근거를 신설(안 제5조의2)
- 원격 출석 발언 근거를 신설(안 제26조제3항)
- 도지사·교육감 등의 원격 출석 답변 근거를 신설(안 제26조의2)
- 준용규정 추가(안 제6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원격 출석)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(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

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도지사·교육감 등의 원격 출석)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지사,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.

제62조 중 “제6조”를 “제5조의2, 제6조”로, “제27조”를 “제26조제3항, 제26조의2, 제27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5조의2(원격 출석)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(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6조(발언의 장소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6조(발언의 장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26조의2(도지사·교육감 등의 원격 출석)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사,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.</u></p>

제62조(준용규정) 제6조, 제25조, 제27조, 제28조제2항,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와 제39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하되, 의장을 위원장으로,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
제62조(준용규정) 제5조의2, 제6조-----
제26조제3항, 제26조의2, 제27조-----

--.